

## 일본의 돈육수입 제도는어떻게?

이 호 균  
(현대종합상사(주) 오사까지점)

일본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관세적용은 일단 일본 「관세 6법 제67조」가 기본이 되며, 모든 수입품중 돈육만 기준가격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이는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7」 및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돈육의 기준수입가격 고시에 의한 것이다.

동 고시에는 박피한 지육의 경우 kg당 550엔이며, 탕박한 지육의 경우엔 kg당 512.5엔으로서 매년 기준가격이 변경되고 있으며,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육을 수입하는 경우, 후생성 검염소(한국의 「보사부」에 해당) 및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가 필요하며, 이는 동일 품목을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생략되는 것이 상례이다.

여기서 돈육의 관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본의 동 품목을 수출코자 하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동 품목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현행 관세제도, 즉 차액관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입자유화에 의해 싼 가격의 돈육이 대량 수입될 경우 일본 국내의 돈육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양돈농가의 안정공급을 확보시켜 주며 국민의 식육수요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가격 이상의 수입품에는 종가세율(從價稅率)을 적용하며, 저가격(低價格)의 수입품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차액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수준에 의한 수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가격은 농림수산대신(농림부장관)이 「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돈육의 안정기준가격 및 안정상위가격의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가

격으로 대장대신(재무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매년 기준가격이 변하는 것은 필수적인 바, 표1을 보게 될 경우, 기준가격이 매년 내려가고 있음은 물론, 엔고 현상에 기인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큰 요인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 함이 주목적이다.

상기 기준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돈육의 방비수단인 바, 기준가격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관세율에 의한 관세가 책정되고 있다.

표 1. 일본의 돈육 기준수입가격 추이

(단위 : 엔 / kg)

| 구분         | 연도  | 가격     | 기준수입가격 | 안정가격   |        |
|------------|-----|--------|--------|--------|--------|
|            |     |        |        | 안정기준가격 | 안정상위가격 |
| 껍질 벗긴 지육   | '83 | 690    | 690    | 600    | 780    |
|            | '84 | 690    | 690    | 600    | 780    |
|            | '85 | 690    | 690    | 600    | 780    |
|            | '86 | 650    | 650    | 540    | 760    |
|            | '87 | 550    | 550    | 455    | 645    |
| 껍질 안 벗긴 관육 | '83 | 642.50 | 642.50 | 560    | 725    |
|            | '84 | 642.50 | 642.50 | 560    | 725    |
|            | '85 | 642.50 | 642.50 | 560    | 725    |
|            | '86 | 602.50 | 602.50 | 500    | 705    |
|            | '87 | 512.50 | 512.50 | 425    | 600    |

즉, 표2에 명시된 「돈육 등의 관세율」 및 표3에 나타난 「돈육의 관세도해」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박피한 지육에 대한 62년도의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가격이 523엔 81전 이하인 경우 차액관세가 적용되며, 기준수입가격 550엔과 과세가격(CIF가격)과의 차액이 관세액에 해당된다. 또한 과세가격이 523엔 81전을 넘을 경우에는 종가세 5%가 적용되며 과세가격의 5%가 관세액이 된다.

표 2. 일본의 돈육 등의 관세율 ('87년도)

| 품명                              | 관세율                      |                        |
|---------------------------------|--------------------------|------------------------|
| 돈(성돈)                           | 54X - Y 혹은 10%로 높은 쪽     |                        |
| 돈육                              | 지육                       | X - Y 혹은 5%로 높은 쪽      |
|                                 | 지육이외(부분육)                | X/0.75 - Y 혹은 5%로 높은 쪽 |
| HAM, BACON<br>염장등의 돈육<br>돈육 조제품 | 1.5X - 0.6Y 혹은 10%로 높은 쪽 |                        |

(주) X : 기준수입가격 Y : 과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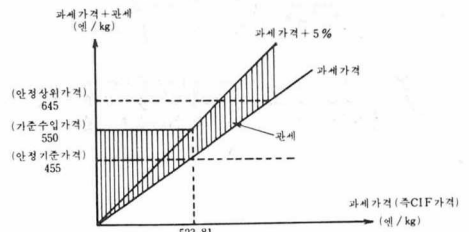


그림1. 일본의 돈육 관세도해

즉, 적용세율의 분기점이 되는 523엔 81전은 과세가격에 5%의 관세를 부과한 가격과 기준수입가격이 같아지는 점으로써 기준수입가격을 1.05로써 나누면 된다(550엔 ÷ 1.05 = 523엔 81전).

박피를 하지 않은 지육의 기준수입가격은 박피한 지육보다 약간 낮은 가격(512.50엔)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세책정방법은 동일하다. 또한, 지육 이외의 돈육 즉, 햄(Ham), 로인(Loin) 등의 부분육은 지육에서 부분육을 만들 경우의 수율을 75%로 간주하기 때문에, 껍질 벗긴 지육의 기준수입 가격을 0.75로 나눈 가격이 차액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된다(550엔 ÷ 0.75 = 733.33엔). 즉, 과세가격은 733.33엔을 1.05로 나눈 가격이 된다(733.33엔 ÷ 1.05 = 698.41엔).

따라서, 일본의 돈육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부분육을 수입할 때 CIF 가격을 상기 698.41엔

에 맞추어서 수입하길 원하는데, 이는 차액관세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돈육의 부분육을 kg당 650엔(CIF)으로 수입했을 경우에는 관세적용이 83.33엔이 된다(733.33엔-650엔=83.33엔).

따라서, CIF 가격을 698.41엔 이하로 수입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698.41엔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는 5% 관세인 34.92엔이 된다. CIF가격이 698.41엔 이상되는 고급부위인 경우에도 관세는 5%가 됨은 물론이다.

참고로 돈육의 관세는 '80년도에는 10%였는데, '84년도에 6.9%로 떨어졌으며, '86년도부터는 5%로 재조정되었다. 이렇게 관세가 떨어지는 것은 일본측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대외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무역마찰 해소를 위해 '85년 동경 ROUND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세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기준가격제도가 존재는 한, 일본으로의 수출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일본의 '87년 8월까지의 국가별·돈육 수입통관 실적(부분육)

(단위: 수량: kg, 금액=천엔)

| 국 | 별  | 수           | 량 | 금           | 액 |
|---|----|-------------|---|-------------|---|
| 한 | 국  | 1,132,410   |   | 867,825     |   |
| 대 | 만  | 76,846,474  |   | 57,430,002  |   |
| 태 | 국  | 97,713      |   | 68,245      |   |
| 아 | 이스 | 36,532      |   | 30,253      |   |
| 노 | 르  | 253,060     |   | 189,064     |   |
| 스 | 웨  | 950,971     |   | 716,558     |   |
| 덴 | 마  | 53,206,272  |   | 39,233,453  |   |
| 영 | 국  | 217,436     |   | 166,926     |   |
| 아 | 일  | 2,036,793   |   | 1,499,095   |   |
| 서 | 독  | 37,451      |   | 29,725      |   |
| 핀 | 랜  | 271,356     |   | 213,808     |   |
| 카 | 나  | 11,256,545  |   | 8,265,500   |   |
| 미 | 국  | 10,455,636  |   | 8,157,468   |   |
| 바 | 뮤  | -           |   | -           |   |
| 맥 | 시  | 475,544     |   | 357,989     |   |
| 호 | 주  | 293,612     |   | 212,414     |   |
| 합 | 계  | 157,567,805 |   | 117,438,325 |   |

마치고 최근 몇 년간 각국별로 일본에 수출한 통계자료를 표3와 4에 나타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의 전체 수입물량은 '86년부터 20만M/T이 넘어섰으며, 금년 8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5.8만M/T인데, 금년 전망은 20만M/T이 훨씬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일본의 전체 수입량의 반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3~4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량은 '86년에 751M/T이었는데, 금년 8월까지 1,132M/T이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2,000M/T에 달할 것으로 일본 수입업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돈육 CCCN 번호는 0201인데, '88년부터 0203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표 3. 일본의 연도별 돈육 총 수입물량

(단위: 수량=M/T, 금액=천엔)

| 연·월별    | 돈 육      |             |
|---------|----------|-------------|
|         | 수        | 금 액         |
| '82년    | 143,588  | 135,912,333 |
| '83년    | 167,898  | 153,664,004 |
| '84년    | 199,838  | 169,774,649 |
| '85년    | 195,200  | 167,345,796 |
| '86년    | 213,315  | 176,189,701 |
| '87년 1월 | 15,661.8 | 12,583,685  |
| 2월      | 11,447.0 | 9,222,589   |
| 3월      | 14,628.5 | 11,815,800  |
| 4월      | 17,736.2 | 13,215,110  |
| 5월      | 26,443.1 | 18,518,886  |
| 6월      | 27,009.9 | 18,940,595  |

이상 일본의 돈육수입제도에 대한 설명을